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4. 9(수) 10:00

제25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추 병 수

『독산배드민턴체육관』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8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3. 28.
- 라. 회부일자 : 2025. 3. 28.

2. 제안이유

관내 체육시설인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행 추진근거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2)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관리)
- 3)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

나. 위탁·대행 추진 필요성

-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2)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

- 1) 위탁사업 :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 2) 위탁기관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4. 참고사항

-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관리)
- 5) 서울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해당 체육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년간 노하우 및 전문성을 갖춘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금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 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

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
3. 각종 구립 문화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